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866

2024년 6월 25일
보건복지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5월 27일 유만희 의원 외 15명
2. **회부일자** : 2024년 5월 30일
3. **상정일자** : 제324회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년 6월 17일 상정· 의결(원안 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유만희 의원)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서울특별시 의회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청구수리 완료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발의되었음. 이에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자립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

설에서 나오는 물리적 의미의 ‘탈시설’ 용어 대신 실질적 자립을 지원하는 ‘자립지원’ 용어로 대체 사용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자립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는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제정된 조례로, 자립지원에 대한 근거를 유지한다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 조례명 또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지역사회 자립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주택’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2호·제5호 및 제6호 신설)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을 신설함.(안 제4조제4호 신설)

○ 지역사회 정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거주시설 퇴소 퇴소 장애인 자립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신설함.(안 제5조의2 신설)

○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을 신설함.(안 제15조제2호·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다. 입법예고 : 2024.6.4.~ 6. 8.(의견 44)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주병준)

1 개정안의 개요

○ 본 조례 개정안은 2024.3.25. 주민조례청구로 발의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에 따라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에 관한 조례(이하 ‘탈시설 지원조례)’가 폐지되는 경우를 전제로,

○ 이 ‘탈시설 지원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사업의 공백을 예방하고, 장애인 스스로의 자기결정권에 기반한 실질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현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의 내용을 신설·보완하는 한편, ‘탈시설 지원조례’에서 규정되었던 관련 조문을 이관하여 개정하였음.

2 개정안의 주요개요

가. 개정안의 내용

1) 조례 제명 변경

○ 현행 조례명인「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 ‘자립지원’이란 종래의 물리적·공간적 의미로만 사용하여 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었던 ‘탈시설(화)’ 개념을 대체하는 의미로 사용함

- ‘탈시설(화)’ 이라는 용어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용어가 아니라 해석지침에서 사용된 용어로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제19조)에서는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06년)
- 따라서 그간 오해와 갈등을 가져온 ‘탈시설(화)’이라는 개념을 대체하여 정부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보다 중립적인 용어인 ‘자립지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한편, 제명에 새로 추가된 ‘지역사회 정착’이라는 개념은 ‘자립생활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보다 상위의 목표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됨.

○ 결국 개정조례안의 제명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는 동 조례안이 추구하는 목표와 수단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1].

---

1) 법제처의 자치법규 지침 성격인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서는 자치법규의 제명은 그 자치법규의 규율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함축적인 내용으로 간결하게 표현해야 하며, 규율 내용 전체에 대

2) ‘탈시설 지원조례’에서 이관한 조항

○ ‘탈시설 지원조례’는 그 목적에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나온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생활하면서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제1조, 목적)하고, 이를 위한 지원수단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들의 자립지원을 지원하는 기본조례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음.

○ 따라서 ‘탈시설 지원조례’ 폐지 후에도 퇴소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이 차질없도록 ‘탈시설 지원조례’ 상의 자립지원을 위한 주요한 정책이나 수단들을 개정조례안에 이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 정의 규정(안 제2조제2호, 제5호부터 제6호까지)

○ ‘탈시설 지원조례’ 정의 규정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지원주택”, “자립생활주택”에 대한 정의를 이관하여 개정조례안에 신설함.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신 설〉	2. “지역사회 자립지원”이란 장

한 대표성이 있어야 하고, 그 자치법규의 내용이 무엇에 관한 것인가를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애인 거주시설에서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여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생 략)	1. (현행 제2호와 같음)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신 설〉	6. “지원주택”이란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5. “자립생활주택”이란 시설퇴소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일정기간 관련 서비스를 지원받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7. ----------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하거나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 ---------- 주택----------.
7.·8. (생 략)	8.·9. (현행 제7호 및 제8호와 같음)

○ “장애인 거주시설”(안 제2조제5호 신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별표4)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시설을 말하며 해당하는 시설은 총 39개소가 있음.

〈서울시 거주시설 현황 〉

(단위: 개소,명, ‘23.1.1. 기준)

구 분	계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 증 거주시설
	정원	현원	지체	시각	청각언어	지적	
시설 수	39개소		2	3	1	11	22
이용인	2,371	1,934	82	90	22	542	1,198
종사자	1,869	1,661	71	88	26	507	969

※ 출처 : 서울시 내부자료(장애영유아 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제외)

- 장애인 거주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6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임.
- 서울시의 장애인 탈시설 정책에 해당하는 거주시설로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과 유형별 장애인거주시설로 서울시 관할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거나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을 우선순위 대상으로 설정함.
- 집행기관의 사업수행상 영유아 거주시설은 6세미만의 장애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단기거주시설은 1개월 미만의 단기 및 일시적 주거서비스에 해당되며, 공동생활가정은 자립·독립생활이 보장되는 대안적 주거형태로 인정됨.

〈장애인거주시설 종류 및 기능〉

종 류	기 능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장애유형이 같거나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이용하게 하여 그들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주거지원 · 일상생활지원 지역사회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주거지원 · 일상생활지원 · 지역사회생활지원 ·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보호하고 재활에 필요한 주거지원 · 일상생활지원 · 지역사회생활지원 ·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단기간 주거서비스,일상생활지원서비스,지역사회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지도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주거시설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 장애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을 제공하는 여러 개의 개별 주거 공간을 설치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주거지원 · 일상생활지원 · 지역사회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지원주택”(안 제2조제6호 신설)이란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2]에 따라 주거유지지원서비스와 함께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말하며, “주거유지지원서비스”란 지원주택 입주자가 독립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와 함께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함.

---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원주택"이란 주거유지지원서비스와 함께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2. "주거유지지원서비스"란 지원주택 입주자가 독립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와 함께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지원서비스제공기관"이란 지원주택을 활용하여 입주자를 대상으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장애인 지원주택 사업개요〉

○ 지원대상: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장애인 중, 독립생활 희망 무주택 1인가구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4,179,557원) 이하 - (자산) 세대 구성원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2.41억원 이하 ※ '24년 기준 ○ 주택공급 : 입주자 모집공고(SH) 및 선정(시 지원주택 장애인분과) ○ 운영방법 : 지원서비스제공기관(보조사업자)공모선정 ○ 운영현황 : 9개 자치구 275호 공급, 12개 보조사업자 ○ 지원내용 : 공공임대주택(SH)공급 및 주거유지지원(보조사업자) - 임대차계약:SH-장애인 입주자※ 보증금, 월세, 공과금 등은 입주자 본인 부담(최대 20년 거주) -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입주·퇴거, 주거유지, 위기·긴급 지원-

○ 서울시는 2016년부터 정신질환이나 알코올중독,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부터 매입임대주택을 공급받아 지원주택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음. 2019년부터 지원주택을 확대 실시하여 장애인지원주택의 지원실적으로 '24년 기준 총 275호 중 커뮤니티룸 24호를 제외한 251호 251명이 입주함.

○ 2021년 한국장애인개발원[3]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퇴소장애인이 지역사회로의 거주이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주택이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주택에 주거유지지원서비스가 연계될 때 장애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개별적인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거주시설 퇴소장애인에 대

3) 한국장애인개발원,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주거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2021년

한 주거지원과 그에 따른 주거유지지원 서비스 제공은 필요하다 하겠음.

② 대상자(제3조), 시장의 책무(제5조), 퇴소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계획(제5조의2), 기본계획 등(제6조), 사업의 범위(제8조) 등

○ 개정 조례안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탈시설 지원조례' 상의 시설 퇴소 장애인의 자립지원에 관한 주요 조항을 대부분 이관하여 새롭게 규정하였다고 판단됨.

○ 다만, 기존 법률이나 조례에 규정이 되어 중복되는 조항은 이관하여 규정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 제8조 지원정책중 '소득보장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4호)' 사업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2[4]에 규정되어 있어 반영하지 않았음.

○ 현재 국가 및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의 경우 이미 탈시설 장애인도 포함하여 참여하고 있으므로 별도 조항 근거 불요하여 반영하지 않았음.

○ 또한 거주시설 변환사업(제8조 지원사업)은 장애인이 시설 퇴소 후 남게 되는 시설 유휴 건물과 종사자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전환 서비스기관으로 변환하는 사업으로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여 미추진 상태로 종료되어 미반영 하였음.

---

4)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반영여부
제3조(대상자) 서울시 관할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거나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대상자)** ➠ **〈반 영〉** 개정안 제2조제2호에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으로 반영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보편적인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장애인 당사자 관점에서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한다. ②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며,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공적자원을 충분히 지원한다. ③ 장애인은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모든 과정에 참여하고 스스로 결정한다.	**제4조(기본원칙)** ➠ 〈미반영〉 개정안의 목적에 기본원칙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 개정안 신설 불필요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탈시설을 통한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이행 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 및 지원 2. **탈시설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행** 3. 자치구 및 민간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4. 그 외 탈시설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시장의 책무)** ➠**〈 반 영 〉** 종전 제5조제2호**(탈시설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행)은 개정안 제5조의2(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자립지원 기본계획)에 반영**
제6조(기본계획등) ① 시장은 탈시설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지원하기 위하여 **탈시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 방향 2. 운영 및 지원체계 3. 주요 성과기준 및 연차별 목표	**제6조(기본계획등)** ➠**〈 반 영 〉** 개정안 제5조의2에 반영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자립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4. 필요 재원 확보 및 배분 5. 그밖에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탈시설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협의체) 시장은 탈시설 정책 등을 자문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둘 수 있다.	**제7조(협의체)** ➠〈 미반영 〉 **민관협의체는 '22년 임기만료**되었으며, 현재 장애인복지위원회 **'자립지원 소위원회'가 협의체 기능을** 하고 있음
제8조(사업의 범위) 시장은 장애인의 탈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사업의 범위)** ➠**〈 일부반영 〉** 개정안 제15조제2호(지원주택 운영)에서 제3호(자립생활주택 운영 지원), 제5호(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에서 제7호(조사,연구,교육,탈시설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까지 반영
1. 지원주택 및 자립생활주택의 운영	**반영**
2.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자립 지원	**반영**
3.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반영**
4. **소득보장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	**미반영**(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3조2에 규정되어 있어 반영 불필요)
5. 장애인거주시설 변환 지원	**미반영**('거주시설 변환'은 시설을 폐지하여 타 복지기관으로 변환 한다는 의미가 있어 미반영
6. 탈시설 관련 조사·연구·교육	**반영**
7. 그 밖에 탈시설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반영**
제9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탈시설 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을 수행하는 자치구 또는 민간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예산지원)** ➠〈 미반영 〉 개정안 제15조에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의 근거로 추진하고 있어 별도 반영 불필요

3) ‘탈시설 지원조례’ 규정을 보완하여 이관·신설한 조항

①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 등(안 제4조제4호 신설)

○ 안 제4조제4호(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는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탈시설 지원조례’ 제8조 탈시설 지원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15조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음.

○ 현 조례의 ‘시설퇴소자에 대한 지원’(제15조)을 시설 퇴소자의 자립지원 사업 외에 개정안의 제2호 및 제3호는 시설 퇴소장애인과 재가 장애인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였음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 시장은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제4조(지원)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
4. ~ 6. (생 략)	5. ~ 7. (현행 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제5조(계획의 수립) ① ~ ④ (생 략)	제5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계획의 수립)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자립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시

	장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자립지원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제5장 지역사회 전환	제5장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제15조(시설퇴소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중 희망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공, 지원하여야 한다. 1.개인별 자립생활지원계획 수립 2.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주거의 지원 3.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정착금의 지원	제15조(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 시장은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자립생활을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희망할 경우, 자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 자립을 희망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1.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2. 지원주택 운영 지원 3. 자립생활주택 운영 지원 4.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정착금의 지원 5. 자립 초기 적응을 돕기 위한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6. 지역사회 자립지원과 관련한 조사, 연구, 교육 등

	7. 그 밖에 지역사회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한 경우
제16조(자립생활주택 운영) 시장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을 경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한다.	〈삭 제〉

②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자립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의2 신설)

○ 본 조례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계획의 수립(제5호)과 별도로 안 제5조의2(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자립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에서는 거주시설 퇴소장애인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자립지원 기본계획을 5년단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5개년 계획을 2013년부터 기 시행하고 있고 현재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자립지원 기본계획을 수립 검토 중에 있음.

○ 따라서,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자립지원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추진이 차질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것임.

3 종합 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시설 퇴소 장애인 자립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탈시설 지원조례' 폐지를 전제로, 이 '탈시설 지원조례' 상의 시설 퇴소 장애인 자립지원에 관한 내용을 통합하여 이관 규정함으로써, 조례폐지 후에도 시설 퇴소 장애인 자립지원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탈시설 지원조례'상의 '탈시설'을 위한 지원사업들을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으로 확대 신설하여, 퇴소 장애인 뿐만 아니라 재가 장애인까지 포괄하여 자립지원이 가능하도록 두 조례를 통합한 종합적인 조례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특히 물리적 의미의 '탈시설' 용어 대신 '자립지원'이라는 용어로 대체 사용하여 용어와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고, 동 개정조례안의 제명 및 목적(제1조)에서 조례안의 취지가 장애인의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것에 있음을 명확히 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토론요지 : 「없음」

Ⅵ. 심사결과 : 원안 가결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만희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866

발 의 년 월 일 : 2024년 05월 27일
발 의 자 : 유만희, 강석주, 김규남, 김영철, 김지향, 김태수, 김형재, 남창진, 민병주, 박상혁, 박ㆍ석, 박영한, 박칠성, 유정인, 장태용, 허ㆍ훈, 홍국표 의원(17명)

1. 제안이유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청구수리 완료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발의되었음. 이에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자립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설에서 나오는 물리적 의미의 '탈시설' 용어 대신 실질적 자립을 지원하는 '자립지원' 용어로 대체 사용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자립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는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제정된 조례로, 자립지원에 대한 근거를 유지한다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 조례명 또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지역사회 자립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주택’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2호 · 제5호 및 제6호 신설)

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을 신설함.(안 제4조제4호 신설)

라. 지역사회 정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자립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신설함.(안 제5조의2 신설)

마.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을 신설함.(안 제15조제2호 ·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호를 제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5호) 중 “시설퇴소”를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하거나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으로, “주거공간”을 “주택”으로 한다.

2. “지역사회 자립지원”이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여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장애인 거주시설”이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4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지원주택”이란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제4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

제5조의 제목 “(계획의 수립)”을 “(장애인자립생활지원계획의 수립)”으로 한다.

제2장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자립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자립지원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제5장의 제목 “지역사회 전환”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 시장은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자립생활을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희망할 경우, 자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 자립을 희망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1.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2. 지원주택 운영 지원
3. 자립생활주택 운영 지원

4.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정착금의 지원

5. 자립 초기 적응을 돕기 위한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6. 지역사회 자립지원과 관련한 조사, 연구, 교육 등

7. 그 밖에 지역사회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한 경우

제1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신 설>	2. “지역사회 자립지원”이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여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생 략)	1. (현행 제2호와 같음)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신 설>	6. “지원주택”이란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5. “자립생활주택”이란 시설퇴소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일정기간 관련	7. ----------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하거나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

서비스를 지원받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 주택----------.
7.·8. (생 략)	8.·9. (현행 제7호 및 제8호와 같음)
제4조(지원) 시장은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제4조(지원)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
4. ~ 6. (생 략)	5. ~ 7. (현행 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제5조(계획의 수립) ① ~ ④ (생략)	제5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계획의 수립)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자립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자립지원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제5장 지역사회 전환	제5장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제15조(시설퇴소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중 희망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15조(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 시장은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자립생활을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희

제공, 지원하여야 한다. 1. 개인별 자립생활지원계획 수립 2.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주거의 지원 3.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정착금의 지원	망할 경우, 자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 자립을 희망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1.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2. 지원주택 운영 지원 3. 자립생활주택 운영 지원 4.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정착금의 지원 5. 자립 초기 적응을 돕기 위한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6. 지역사회 자립지원과 관련한 조사, 연구, 교육 등 7. 그 밖에 지역사회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한 경우
제16조(자립생활주택 운영) 시장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을 경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한다.	<삭 제>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같은 조례에 제4조(지원)제4호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과 제15조(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 각 호의 사업을 추가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나 확인결과 기시행[1] 사업으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 희 선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 계 분 석 관	손 제 승
	☏ 02-2180-7954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1) 장애인지원주택 운영(2024년도 예산 **8,385,121천원**),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2024년도 예산 **4,250,178천원**),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체계 구축 시범사업(2024년도 예산 **709,398천원**) 등 기시행사업